
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4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임미애 · 이건설
전진숙 · 김선민 · 김현정
김문수 · 서영석 · 김 윤
신장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

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중 업무수행)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4조의2(진료지원업무 교육과</u> <u>정 중 업무수행) 제14조제1항</u> <u>제2호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</u> <u>행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이수</u> <u>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</u> <u>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</u> <u>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</u>